## 토론문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아시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5개국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은 벼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으로 유교 및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는 등 여러 면에서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가축들과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하고 있어 다른 4개국과는 색다른 문화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는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나름의 이질적인 요소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같은 농경문화라고 할지라도 대륙, 반도, 도서 지역 같은 자연 환경적 특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 냈다. 동북아시아의 문화 생성 과정에서 이러한 동질적 요인들과 이질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무형의 문화유산을 창출해 냈고, 비록 기원이나 명칭은 비슷하더라도 저마다 독특한 형태의 문화적 표현양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 북아시아 국가들은 일찍이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전통의 문화유산이 급격히 소멸할 위 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반세기 이전에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도입하여 보호 제도를 구축하였고, 중국과 몽골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채택 이후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작성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경우 최근 국내 사정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압히만유 성 유네스 코북경사무소장의 발표를 통해 북한 역시 조선무형문화유산보호협회를 설립하여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 각한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5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어느 지역보 다 이른 시기에 가입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은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가 입을 마쳤고, 북한 역시 지난 2008년에 협약에 가입하였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3국 은 협약의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협약 운영지침 마련과 목록 등재 등 위원회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1월 현재, 아태 지역 정부간위 원회 위원국은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과 인도네시아 및 이란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태 지역을 대표해 정부간위원회의 보조기구인 협약 목록 등재 심사보 조기구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 목록 등재 건수에 있어서도 지난 2010년까지 중국이 총 35종목(긴급보호목록 7종목, 대표목록 28종목), 일본은 대표목록 18종목, 한국은 대표목록 11종목, 몽골은 총 9종목(긴급보호목록 4종목, 대표목록 5종목)을 등재하였으며, 중국과 몽골 그리고 한국과 몽골이 각각 공동으로 등재한 2종목을 감안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만 총 71종목이 등재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에 총 229종목(긴급보호목록 16 종목, 대표목록 213 종목)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동북아시아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북한은 협약 목록에 등재한 무형문화유산이 없으나, 하루 빨리 북한이 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협약 목록에 등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가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동시에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일 지역에 3개의 센터가 설립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삼국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3개의 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동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고, 면적에 있어서도 육지 면적만도 5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4대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며 다양한 문화가 생성되고 소멸되어온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3개의 센터가 한 지역에 설립된다는 것은 이 지역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 중국, 일본 정부와 유네스코 사무국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각국에 설립될 센터의 기능을 나누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및 네트워크 기능, 중국은 훈련 기능, 일본은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로 했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상 위의 기능들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한국과 중국, 일본 센터 관계자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센터 간 협력 체계 구축을위해 상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삼국 센터는 상대 국가의 대표를 이사회 멤버로 포함하고, 센터 관계자 간 조정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태 지역에는 현재 한중일 3개 센터 외에도 이란 센터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한중일 3국의 센터 설립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룬 성과 중에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구축을 언급할 수 있다. 몽골 정부는 지난 수년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를 비롯하여 국가 목록 작성 및 보유자 선정을위한 조사 사업,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대중의 인식 제고를위한 출판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제도를 갖추고 2009년에 71종의 대표목록과 8종의 긴급보호목록을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본 사업을 위해 한국 센터는 유네스코 북경사무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7년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된 지역 협력의 문제이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북한은 분단국으로 사회, 문화, 경제적 여건들이 정치적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센터는 설립준비 초기단계부터이미 유네스코북경사무소의 중재 하에 북한의 전문가들과 접촉한 적이 있고, 특별히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센터가 2008년 베트남 후에(Hue)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회의에는 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교류가 없는 상태이다. 단지, 유네스코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가 북한에 파견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최근 접할 수 있었을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들은 바가 없다.

지금까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한국에 설립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개관해 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과 함께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먼저, 동북아시아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내적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으로도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대로 인해 자칫 소모적인 경쟁으로 치닫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한 국가, 지역,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신뢰와 협력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 기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센터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센터 간의 소통 및 협조 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센터들과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 간의 공조, 그리고 아태 지역 각회원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동 지역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하는데 있어 국제적 공조의 근간이 되리라 여겨진다. 물론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공개 및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향후 활동에 있어서 유네스코 본부, 지역사무소, 카테고리 2기구, 회원국들은 보다 선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수시로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해 지역 협력은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남북한 및 북일 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어 민간 차원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은 상태이며, 한때 활발했던 문화유산 관련 교류협력도 소강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북경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며, 하루 속히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 토론문

후지 토모아키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연구센터 (IRCI) 대표

#### 1. 근대화와 세계화 과정

2011년 일본 북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재난은 배제하더라도,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광범위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 재해가 아니라도 전통문화, 특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 내려온 무형문화유산을 변형하거나 소멸시킬 심각한 위험은 동북아시아 지역 도처에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변화를 포함한 근대화 추세를 꼽을 수 있다.

문화와 전통의 기반이 되는 농촌 마을 공동체의 생활방식은 산업구조 변화와 젊은 세대의 도시 유출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과소인구와 출산율 감소를 가져왔다.

요컨대,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문제는 촌락 공동체에 남은 고령자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할 후손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변화로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화 열풍으로 인해 대중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에 비추어지는 서구 문화의 영향이 문화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변형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도전과제가 이러한 모든 요소에 걸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 II. 조사 연구와 데이터 수집

지역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는 수많은 전통문화가 정치, 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변형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소멸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통으로 이어 내려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화를 기술한 유서 깊은 문서기록, 고령자의 기억, 그림 및 사진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연대순으로 편집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록, 구전되어 내려온 기억과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담은 비디오 등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조사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훼손된 무형문화유산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될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III. 보호, 보존 및 전승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이 대대로 전승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정부가 제정한 규정의 테두리 안에 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은 문화정책과 교육제도를 통해 적극 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무형문화유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오늘날 이는 이미 전세계에서 성공적인결과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복원 및 부흥과 관련한 문제점과 조치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단지 몇몇 견해만을 피력하도록 하겠다.

## 토론문

양지 중국 카테고리 2센터 (CRIHAP) 대표

#### I.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구축 의 필요성과 긴급성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래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덕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글로벌 경제통합의 여파에 휩쓸려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와같은 사안들은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지역 협력은 상기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협력이 활성화되면 모범사례 공유, 경험 교류, 상호 학습 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 인력, 실질적 경 형, 국제적 시야 부족 등 각국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렇게 되면 무형문화유산의 '완전한' 보호라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수립한 여러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보유자들은 일정 정도의 이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 정치적, 개인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특정 시기에 영토와 국경이 바뀌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무형문화유산 역시국가, 민족, 영토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여러 국가, 민족,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공통된 특성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지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 된다.

# II.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협력 의 전망과 잠재성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의 경우,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지역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며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아태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수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유구한 역사와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며, 빈번한 문화교류 덕분에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동북아 5개국만 해도 70여 개 민족이 존재하고 200여 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아태지역 전체 인구의 반에 해당되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이렇게 풍부한 자원 덕분에 아태지역에서 지역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환경, 지속적인 인구이동,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문화교류로 인해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공통된 특성을 갖게 되었고, 그 중일부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은 비슷한 기회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관계는 성공적인 지역 협력의 안정적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은 역량강화에 있어 몇 가지 문제와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아태지역에 위치한 44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24개국이고, 20개 국가는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20개국은 도합 100여 개의 유산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으나(총 등재 종목 수의 50%) 나머지 24 개국은 한 종목도 등재하지 못했다. 동북아 5개국은 모두 협약 당사국으로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등재신청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상호교류, 협의, 공조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일부 국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지금까지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문 인력 및 기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연구에 대한 경험도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대표목록에 등재하거나 공동체 기반의 목록작성 경험은 거의 전무하다. 일부 국가는 현재의 국제 교류 및 협력 메커니즘과 절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시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아태지역 내부의 불균형과 별개로 이 지역과 타 지역 사이에는 상당한 문화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세계화라는 외부 압력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은 반드시 광범위한 협력관계구축해야 한다.

요컨대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의 지역 협력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지역 협력은 역내 자원, 역량, 경험의 부족을 해결하고, 세계경제의 부정적 영향과 문화적 동질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모든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 협력의 잠재성과 전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III.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협력 구축에 있어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훈련센터(CRIHAP)'의 임무와 의지

중국은 줄곧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세기 초반부터 베이징 대학을 필두로 여러 고등교육 기관들이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및 연구를 중점으로 하 는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이들 연구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50년대 들어서는 민속 및 전통문화 표현물에 대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에 속한 지역 문화 전문 가들이 대규모로 투입되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결작 선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전통극 쿤취(Kunqu Opera)와 구친 음악(Guqin Music) 등 여러 종목이 결작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유네스코 목록 등재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통 민속문화 보호 프로그램 실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4단계 보호 시스템(국가-성(城)-직할시-자치구) 구축, 문화부 산하 무형문화유산국 설립, 국립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및 지방 센터 개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지원과 주도 하에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전국의 공동체, 단체 및 개인들이 연구, 보호, 목록화, 등재신청등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6월 둘째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을 반포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보존, 연구, 계승하기 위해 중국이 기울이는 노력은 보다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실시한 상기 조치들 덕분에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중국은 수년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전반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는 중국이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경이자 탄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5월 중국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중국이 축적한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유네스코 산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훈련센터 (CRIHAP)'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다.

CRIHAP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역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기반이 될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CRIHAP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증진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이의 이행을 장려 한다.
-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 관련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

들의 역량을 키운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

상기 명시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CRIHAP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1) 다음의 주제와 관련하여 정규 및 현장교육을 포함한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이 필요한 연수생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촉진하는 법적, 행정적, 기술적, 경제적 조치들을 포함 한 여러 정책사례
  -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기록화에 대한 유네스코 발간자료 소개 및 현장업무에 적용
  -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을 포함한 정규 및 비정규 과정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교육
- (2) 국내외 전문가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과학연구 단체를 섭외하여 상기 언급한 연수 프로그램의 전임강사 및 자문관 역할을 담 당하도록 한다.
- (3)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관, 특히 유네스코 산하 기관 (카테고리 2기구)들과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강화한다.

결론적으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과 교류를 시행하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을 구축·지원하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증진하며, 전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CRIHAP의 확고부동한 책무인 것이다. 이는 CRIHAP의 목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유네스코와 체결한 협정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CRIHAP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 Ⅳ.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강화 방안 제안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에 효과적인 협력 및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한 중일 카테고리 2기구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2.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 각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연락담 당관을 지정하여 명부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의 지역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
- 3. 지역 협력 관련 정기회의 등 효과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자 및 다자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의견과 시범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4. 지역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정기 보호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안정된 기반과 추진력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 5.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거 나 지역 협력을 위한 기존 체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 협력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보호 프로 그램의 구체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